###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7084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대주택에 특별법 정법률안	2204855	맹성규의원 등 17인	'24.10.24.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4.11.1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11.20.)
민간임대주택여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여		2204898	김희정의원 등 24인	'24.10.2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4.11.13.)
	. – –	4404090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11.2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1. 28.)는 위 2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 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게 함(안 제49조제8항).

나.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 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법률 제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⑧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그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8 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 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그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8항부터 제11항 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4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되어 있거나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사유로 보증회사가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 ⑦ (생 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⑧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
	는 그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
	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
	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
	<u>항할 수 없다.</u>
<u>⑧</u> (생 략)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
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 ⑦ (생 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⑧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
	는 그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

# ⑧ (생략)

⑨ 보증회사는 제8항 본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정보 공유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생략)

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							
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							
<u>항할 수 없다.</u>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제9항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